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03 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서영석・이건태・김선민

서미화 · 남인순 · 강준현

위성락 · 김재원 · 박민규

이해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·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 요성이 있음.

그런데 「모자보건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,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지속가능한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

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2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, 실태조사 실시 및 정 보공유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8조의2(소아・청소년 보건의
	료체계 구축) ① 국가와 지방
	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
	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
	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
	스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
	록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
	를 구축하여야 한다.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ㆍ청
	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
	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
	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
	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
	를 실시할 수 있다.
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ㆍ청
	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
	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
	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
	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	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
	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
	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
	이나 단체의 장에게 소아ㆍ청

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 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(5)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, 실태조사 실시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